

「 하나 e-플러스 적금 」 특약(구 하나은행)

1. 개정시행일: 2016. 6. 7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하나 e-플러스 적금 (구 하나은행)</p> <p>제 1 조 약관의 적용 하나 e-플러스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예금거래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』과 『적립식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』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2조 ~ 제5조 (내용생략)</p> <p>제 6 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을 하나 N뱅크로 가입 시 또는 예금 가입 후 3개월이내 하나 N뱅크 신규가입 시 연0.1% 우대합니다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(구)하나은행 통장에서 하나카드사 또는 (구)하나은행 제휴카드사의 신용(체크)카드 결제실적이 있을 시 연 0.2% 우대합니다. ③ (내용생략)</p> <p>< 부 칙 > 제1조 본 약관은 2015.12.04 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본 약관은 2015년 12월 04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하며, 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.</p>	<p>하나 e-플러스 적금</p> <p>제 1 조 약관의 적용 하나 e-플러스 적금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『예금거래기본약관』과 『적립식 예금약관』을 적용합니다.</p> <p>제2조 ~ 제5조 (좌동)</p> <p>제 6 조 우대금리 ① 이 예금을 스마트뱅킹으로 가입 시 또는 예금 가입 후 3개월이내 스마트뱅킹 신규가입 시 연0.1% 우대합니다 ②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 이내 KEB하나은행 통장에서 하나카드사 또는 KEB하나은행 제휴카드사의 신용(체크)카드 결제실적이 있을 시 연 0.2% 우대합니다. ③ (좌동)</p> <p>(삭제)</p>	<p>통합약관에 따른 약관명 수정</p> <p>기본약관통일에 따른 용어 정비</p> <p>용어 수정</p> <p>통합에 따른 은행명 수정</p> <p>부칙 삭제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